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다문화가족 정의 및 범위확대 (안 제2조)
○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시책추진, 전담기구와 공무원 구성 등 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지원의 범위 구체화 (안 제4조)
○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안 제7조)

○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자 표창수여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헌 영)

○ 이 조례안은 여성가족부로 부터 2011. 4. 30일 통보된 『다문화가족지원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 인지(認知)와 귀화(歸化)에 따른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함.

○ 안 제3조에 구의 책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활실태 파악, 전담 공무원 및 기구 설치 등 시책추진과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를 보호·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하여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함.

○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 토록하고 협의회는「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대체 운영토록 함.

○ 안 제7조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3년동안(재지정 가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안 부칙에 시행일을 상위법인「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일에 맞추어 2011. 10. 5일부터로 함.

○ 최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와 귀화(歸化)에 따른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용자의 단기적 편익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에 편향되지 않고 각 부서간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단위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함.

○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61 호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관내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추세인 바,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나. 다문화가족 정의 및 범위확대 (안 제2조)

- 다문화가족 : 날때부터 한국인+결혼이민자등 → 한국인+결혼이민자등

다. 구의 책무 (안 제3조)

-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 및 이에 따른 시책추진, 전담기구와 공무원 구성 등

라. 지원의 범위 구체화 (안 제4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지원 등

마.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5조)

- 매년 자치단체장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에 민간단체 관계자 및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지역 공동사안 등 자문

-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

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 근거 마련 (안 제7조)

아. 다문화가족지원 공로자에게 표창수여 (안 제8조)

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1.5.26~6.1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영등포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